

### 3.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##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2. 13. 김제시장 으로부터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2. 15.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2. 17. 제82회김제시의회 정례회  
제1차자치행정위원회상정의결

##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 : 총무과장 도인기)

##### 가. 제 안 이 유

- 행정자치부로부터 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 기구·정원신설 승인 및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## 나. 주 요 골 자

- 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 정원 5인 승인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현재 942인에서 947인으로 증원됨.(안 제2조)
  - 1. 집 행 기 관 의 정 원 : 927인(순증 5인)
  -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0인
-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한시기구정원 기한 연장(안 조례 제380호 부칙 제2조)
  - 당초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개정조례안은, 행정자치부로부터 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 기구·정원신설 승인 및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되어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

○ 검토결과,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특이사항 없음.

### 5. 토론 요 지

○ 특이사항 없음.

### 6. 심 사 결 과

○ 표결결과, 재적위원 9명중 7명 위원이 참석하여, 찬성 5명, 반대 1명,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.